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누4710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	소송대리인 변호사 ○○○
피고, 피항소인	○○○○시 ○○구청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, 담당변호사 ○○○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3. 5. 31. 선고 2022구단68148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10. 13.
판 결 선 고	2023. 10. 2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1. 10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6,311,870원, 지방교육세 16,826,730원, 농어촌특별세 11,217,8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0

소한다.

이 유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.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